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 즉각 멈추라

○ 일시장소 : 2018년 5월 2일(수) 오전11시 경찰청 앞

○ 주최 : 국가손배대응모임[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취재요청서

-.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이하,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문제해결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입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와 민중총궐기 주최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 광우병대책회의, 유성기업 노동자, 강정마을 주민 및 평화 활동가 등 당사자와 국가손배문제해결을 지지하는 단체가 참여합니다.

-. 국가손배대응모임은 2018년 5월 2일(수)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는 주제로,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4.16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참사입니다. 특히 국가는 구조하지 못한 책임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침몰원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가장 큰 책임주체인 국가, 그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과 4.16연대에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이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이에 해당 소송의 문제점을 알리고,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괴롭히기 소송’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면담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와 소속 기자들께서 면밀이 살피어 시민에게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_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 시작발언_정연순 민변회장
  : 국가폭력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손배청구에 대한 규탄
- 재판경과브리핑_서선영 변호사
  :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제기한 손배 재판 경과 및 재판청구의 문제점
- 당사자 발언 1.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입장 :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당사자 발언 2.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낭독 뒤 경찰관계자 면담진행

기자회견 배경, 취지

1.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이 시민, 단체와 함께 416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든 단체인 4.16연대를 비롯, 세월호 집회 참가 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경찰(당시 진압 투입 전의경등)은 2015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경과 별도자료 첨부).

.2. 세월호의 진실을 막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탄압과 방해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경찰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폭력집회',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집회'등으로 폄훼하며 2015년 제기한 소송의 입장을 전혀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3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의 손배청구는 집회참여시민 및 세월호 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위축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괴롭히기 소송'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가로막는 반헌법행위와 다름없습니다.

4 세월호 4주기인 2018년 지금까지 곳곳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해온 시민들의 다양한 촛불문화제 등 집회 시위가 있었으며, 2015년 세월호 집회도 그 과정의 하나입니다.

5. '괴롭히기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경찰의 행태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이자,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나아가 국가 등에 국민에 대한 손배소 자제를 권고한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 권고에도 반하는 등 국제사회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 첨부자료
1. 기자회견문 :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 소송' 즉각 멈추라
2.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 손배청구소송 경과 및 소송의 문제점
3. 세월호 포함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경과

기자회견문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세월호 참사 4주기가 지났다. 2014년 4월 16일, 그 바다에서 구조 받지 못해 사라진 생명들과 그의 가족들, 침몰해가는 배를 바라보던 국민들 모두에게 지난 4년은 가슴아픈 시간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진상규명 방해와 유가족들을 향한 모욕과 혐오에 맞서 싸운 피눈물나는 세월이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새로 출발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 시작을 앞두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온갖 공권력의 억압과 음해, 모독에 맞서 온 피해자 가족들과 지난 4년간 가족들과 함께 비를 맞은 동료시민들의 지난한 연대투쟁의 결실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단순히 새 정부의 의지로 밝혀진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불이익을 불사하고 함께 싸우지 않았다면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이 이끌어온 4.16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극우세력들이 놓는 가장 고약한 덫은 ‘순수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덫이었다. 이 논리가 강요하는 ’피해자다움‘이란 모래알처럼 흩어져 개개인으로서 정부에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고 고분고분 받아가거나 주변사람들로부터 딱한 처지에 대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에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만약 피해자들이 단결하여 진실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따위를 주장하고 집단적 행동에 나서려하면 그것은 불순한 외부세력에 감염되었거나 파렴치한 시체장사를 시도하는 것으로 매도되었다. 그래도 진실과 보상을 맞바꾸라는 국가권력의 유혹과 강요를 거절한 가족들에게는 ‘세월호 빨갱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또한 국가권력은 ‘순수가족’을 제외한 ‘외부세력들’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16연대 등 세월호 관련연대기구와 그 중심인물인 박래군, 김혜진, 한상균 등의 활동가들을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불순한 폭도로 몰아세웠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 뿐만아니라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의 1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다시 시작되는 진상규명 작업에서 추가되어야할 조사과제는 정부의 불법부당한 진실은폐와 공권력 남용에 관한 것이다. 반드시 규명되어야할 공권력 남용 사례 중 하나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파괴공작과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력 남용의 진실이다. 경찰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경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 마당에 아직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시민들을 향한 국가손해배상을 유지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국민이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 진실규명마저 회피하고 가로막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다.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세월호 가족들과 시민운동가들을 향했던 국가폭력의 어제를 사과해야 한다. “경찰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에 대한 ‘괴롭힘소송’ 즉각 멈추라”

2018년 5월 2일

기자회견 참석 일동

세월호 집회에 대한 국가와 경찰들의 손해배상 청구 설명자료

2018. 4. 26.

1. 세월호 참사 4주기가 지났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덮으려고 했던 세월호 참사의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동안 거리에서 싸워온 사람들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던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진실을 바라는 시민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과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 집회(2015년 4월 18일과 5월 1일 집회)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경찰은 집회 주최측과 참가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진상규명의 요구를 위축시키고자 했습니다.

4. 416 연대(416 연대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이 시민, 단체와 함께 416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를 비롯하여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싸웠던 단체와 개인들을 상대로 제기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이하 4월 18일 집회에 대한 소송을 ‘1차 손배’, 5월 1일 집회에 대한 소송을 ‘2차 손배’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정부와 경찰은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의 목소리를 “정치적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416 연대를, 박래군이라는 인권활동가가 “세월호 유가족을 내세워 대정부 투쟁동력을 얻기 위해” 결성한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 시위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국민의 적으로 둔갑시키고 공권력을 조롱”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를 규탄했던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공권력을 조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부 뿐만이 아니라 시위에 출동했던 경찰 40명도 416 연대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1차소송) 그런데 경찰들은 소장에서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위자료 전액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하여 기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하여 또 한번 유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416 연대를 피고로 삼아, 유가족들이 함께 하는 단체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청구하면서 그 돈을 받으면 다시 희생자 가족들에게 기부한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5.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 진실규명마저 회피하고 가로막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과와 달리, 아직 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싸웠던 416 단체와 이들과 연대해 싸웠던 시민들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제기했던 소송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족 단체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문재인 정부의 사과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6.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외쳤던 416 단체와 시민들에게 대한민국과 경찰이 여전히 청구서를 들이밀면서, 박근혜 정부때와 똑같은 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사과는 세월호 시행령 폐기를 외쳤던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유지한 채 완성될 수 없습니다.

7. 세월호 집회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4주기. 지금 철회해도 많이 늦었습니다. 더 이상 이 정부가 잘못을 지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참고자료 1>

1차 소송(서울중앙 2015가단5265227)
-2015. 4. 18.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현황

1. 소송 진행 개요

○ 원고: 1. 대한민국 2. 김00(원고 2. 선정당사자 김00. 김00을 비롯 경찰관 40명이 선정자로 피고들에게 위자료 각 30만원을 청구함)

○ 피고: 1.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2.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 박래군 5. 김혜진 6. 한상균 7. 김00(개인 참가자) 8. 권00(개인 참가자)

○ 재판부: 민사 88단독

○ 접수일: 2015. 7. 27.

○ 소가: 89,855,476

-원고 1 대한민국에게 77,855,476원/원고 2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선정당사자 포함 총 40명)에게 각

300,000원

○ 재판경과: 2018. 5. 11. 오전 10시 40분 5회 변론기일 진행 예정임(동관 457 법정)

2. 대한민국과 경찰의 주요 주장내용

-소장 4면 “ ‘국민대책회의’. ‘범대위’라는 이름은 광우병 시위, 쌍용차 정리해고, 용산철거민 사태 등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여 반정부 투쟁을 주도하여 폭력 시위의 판을 벌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장 6면 “이러한 피고 국민대책회의는 이른바 ’ **박래군 사단** ‘이 모든 의사결정권을 확보했고, 정부·여당에 타격을 줌으로써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정권 수립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소장 7면 “국민대책회의가 유가족과 단일 연대체를 만들어 세월호 이슈를 매개로 **대정부 투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 박래군 사단 ‘을 통해 피고 국민대책회의의 의사결정권을 확보한 박래군은 **세월호 유가족을 내세워 대정부 투쟁동력을 얻기 위해** 416 연대의 결정을 제안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상임운영위원이 되었고” “피고 박래군은...세월호 유가족을 내세워 대정부 투쟁동력을 얻기 위해 피고 416 연대의 결성을 제안했을 뿐 아니라..”

-소장 9면 “2015. 4. 11. 국민대책회의와 4. 16. 가족협의회는 서울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라는 **정치적 주장**을 하면서”

-소장 10면 “세월호 유가족 등 200여명은 4. 16. 22:40부터 청와대를 향해 집단으로 불법행진하다가 광화문 누각 앞에서 저지되자 그 자리에서 농성 돌입하여 차도 점거, 질서유지선 훼손, 경찰관 폭행, 경복궁 관리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장애 초래”

-소장 43면 “마지막으로 원고 2(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만일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위자료 전액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을 위하여 기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장 46면 “이 사건 집회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를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시위대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들은 ’ 대책회의 ‘, ’ 범대위 ‘ 등 익명성의 그늘 아래 숨어 또 다시 폭력행위를 자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 국민의 적 ‘으로 둔갑시키고 공권력을 조롱**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2>

2차 소송(서울중앙 2015가단5304696)
-2015. 5. 1. 노동절 및 세월호 집회 손해배상 소송 현황

1. 소송 진행 개요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1.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2.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4. 박래군 5. 한상균 6. 최영준(416 운영위원) 7. 안00(금속노조 조합원)
○ 재판부: 민사38단독
○ 접수일: 2015. 9. 3.
○ 소가: 22,182,310 (피고 1, 2, 3, 4, 5는 각자 22,182,310원, 위 금원 중 피고 안00는 12,689,780원, 피고 최영준은 6,268,600원)
○ 재판 경과: 2016. 4. 12. 2차 변론기일 진행후 추정됨

2. 대한민국의 주요 주장 내용

-대부분 1차 소송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음

-소장 41면 "전문적인 시위대는 **세월호 참사 등 모든 사회적 이슈를 반정부 투쟁의 동력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위해 악용**하여 다른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 극도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초래하고 있을 뿐입니다…교통체증과 혼란 등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것을 감수할 것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특권층이라도 된 듯이 자랑스럽게 위력을 과시하는 시위대에서 오는 불쾌함,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관계없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용하는 작태가 초래하는 일반 시민의 분노를 이제는 감소시키고 사라지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가에 의한 손배가압류 현황

(2018년 4월 기준)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2015. 4. 18.)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 선체인양과 시행령 폐기 등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가 2015년 4월 18일 개최되었습니다. 집회 도중 광화문 누각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으나 경찰은 이미 준비한 경찰차량 477대를 동원해서 차벽을 쌓고 행진을 막았습니다. 국가는 이날 집회로 인해 차량 및 장비 등 물적 피해와 경찰관들의 치료비등 인적 피해 배상 명목으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 3개의 단체와 박래군을 비롯한 5명의 활동가 등을 상대로 77,855,476원의 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 개인 40명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전체 소가 89,855,476원). 2015년 7월에 제기된 이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며 2018. 5. 11. 5회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 (2015. 5. 1.)

2015. 5. 1. 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에 이어 세월호 시행령 폐기등을 위한 범국민철야행동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길목을 차벽, 지하철 입구 봉쇄 등을 통해 막았습니다. 이날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연행되고 다쳤습니다. 국가는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로 인해 약 1,4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세월호 1박2일 집회로 인해 790만원여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민대책회의, 416 연대, 민주노총과 박래군, 한상균에게는 22,182,310원을, 그 외 노조 활동가 등 개인에게도 그 중 일부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9월에 제기되었고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쌍용자동차 – 국가폭력진상규명 대상 선정 내용 넣을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을 점거하고 쟁의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국가(경찰)는 2009년 8월 4일과 5일 양일간 헬기, 기중기 등을 동원하여 진압작전을 실시하였고 진압작전 과정 등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및 지부 조합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 진압작전 등에서 발생한 각종 장비와 차량, 헬기, 기중기 손해와 상해를 입은 경찰들의 국가 부담 진료비, 그리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약 16억 7,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약 11억 6,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매일 62만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2017년 6월 8일까지 지연손해금은 약 6억 2,400만 원), 조합원 67명에 대해서는 임금 및 퇴직금에 가압류가, 조합원 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2009년 파업으로 인해 94명이 구속되었고 300여명이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하

여 손배해상 청구, 가압류까지 이중, 삼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한편, 쌍용자동차지부 쟁의행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국가폭력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팀에서 조사 중입니다(진상조사팀 2018. 2.1. 구성).

4.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것을 응원하고자 '희망버스'가 조직되어 시민들이 영도조선소 내외에서 집회시위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하였고, 1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거나 여전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형사책임과는 별도로, 대한민국과 당시 출동한 경찰 개인들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와 활동가, 개인 등 총 6명을 피고로 총 15,281,57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대한민국에게는 4,376,000원, 경찰 개인 총 14명에게는 위자료 등 명목으로 합계 10,905,570원). 1심 법원은 일부 피고가 희망버스를 조직, 운영하는 핵심인물로서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권유하고 격려하는 행동을 명시적으로 했다고 보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 광우병대책회의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중 집회참가자 중 일부에 의해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와 소속 단체, 담당 활동가 등에 대해 국가가 약 5억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13년 10월 31일, 1심 재판부는 수만 명의 불특정의 사람들이 수개월에 걸쳐 참여한 집회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가 이에 항소했으나 2016년 8월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2016년 9월, 국가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6. 민중총궐기 (2015. 11.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등 11대 과제를 요구하며 2015년 11월 14일 서울시청 광장,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주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은 이 집회 시작 전부터 주최 측의 시청광장에서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인도 행진 집회 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하였고, 전시에 준하는 갑호비상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 자체를 사전에 압박하였으며,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에 3중의 대규모 차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위 집회 중 경찰은 집회 참가자 전체를 불법시하여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살수차를 직사로 살수하고 캡사이신을 난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와 경찰관 90여 명은 2016년 2월 16일, 이 사건 주최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과 그 대표자 한상균을 비롯한 집행부는 물론 일부 집회참가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

송을 제기하였고 집회 중 발생한 물적 피해 약 3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약 3억 8,7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민주노총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피해액 중 약 1억 4,700만원을 관할법원에 각 공탁하였습니다. 현재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일이 추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국가폭력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팀에서 조사 중입니다(진상조사팀 2018. 2.1. 구성).

7. 유성기업

국가(경찰)는 노조원들의 공장 인근 집회장소로의 이동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 127명이 상해를 입고, 방패, 방석모, 우의 등 진압장비들이 분실 및 파손됐다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유성기업 노동조합, 금속노조 충남지부, 충남 건설기계지부 등 노동조합과 조합간부 12명에게 상해를 입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국가 부담 진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분실 및 파손된 장비 배상의 명목으로 약 1억 1,1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해 1심 재판부는 쟁의에 대해 '불법'이라며 국가에 약 1,100만 원을, 그리고 127명의 경찰관 개인에게 총 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회 조합원들은 본 사건 외에도 해당 파업으로 인해 각종 송사에 휘말렸으며(1인당 많게는 71건에 달합니다), 회사가 청구한 40억 원의 손배소송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법률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은 용역업체와 경찰투입으로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회는 항소로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위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2747)에서 2015년 11월 17일 국가와 경찰관 개인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등 청구가 일부 또는 전부 기각된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국가와 해당 경찰관들은 현재까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해군기지 반대 민원 등으로 인해 2010년 1월 29일부터 2014년 7월 28일까지 (54개월) 예정되어 있던 공사 기간이 2010년 1월 29일부터 2015년 9월 26일까지 (68개월)로 연장되었고 이에 공사 연장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는 삼성물산에 275억여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국가(국방부)는 2016년 3월 28일,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의 해군기지 공사 반대 행위로 인해 해당 금액을 삼성물산에게 지급하게 되었다며 275억여 원 중 약 34억 4,8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2017년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34억여원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소송을 두고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며, 구상권 청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 **표 :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액 (단위 : 만 원)**

구분	담당부처	인적피해	물적피해	기타(구상금)	**합계**	**현재 상황**
쌍용자동차	경찰청	22,443	70,218	74,301	**166,962**	1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3151): 원고 일부 승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7442): 원고 일부 승 3심 (대법원 2016다26662): 재판 중
강정마을	해군	-	-	344,829	**344,829**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16771) 법원 조정결정을 2017년 12월 정부가 받아들이며 종결
희망버스 (한진중공업)	경찰청	438	1,091	-	**1,529**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301267): 원고 일부 승 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47442): 재판 중
세월호 범국민대회 (2015. 4. 18.)	경찰청	2,252	6,733	-	**8,985**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65227): 재판 중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 (2015. 5. 1.)	경찰청	123	2,095	-	**2,218**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4696): 재판 중
광우병대책회의	경찰청	24,691	27,018	-	**51,709**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74845): 원고 패소 2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72472): 항소 기각 3심 (대법원 2016다39125): 재판 중
민중총궐기	경찰청	5,889	32,778	-	**38,667**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015): 재판 중
유성기업	경찰청	9,926	1,144	-	**11,070**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9304): 원고 일부 승

질의응답